

제11절 건강권에 대한 차별금지

제1조 (정의)

- ① 이 법에서 “건강권”이라 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하여 장애상태의 호전과 필요한 보건교육, 질병예방 및 치료,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의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한 최고수준의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. 여기에는 의료받을 권리를 포함한다.
- ③ 이 법에서 “의료기기”라 함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기구·기계·장치·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제품을 말한다.
- ④ 이 법에서 “보조기구”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의 재활보조기구를 말한다.
- ⑤ 이 법에서 “의료인”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 ①항에서 말하는 자와 국가에서 정한 자격·면허 등을 취득하고 장애의 치료에 개입되는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언어치료사, 의지·보조기 기사 등의 장애인에 대하여 의료, 재활 등 건강권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.
- ⑥ 이 법에서 “의료기관”이라 함은 ⑤항의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, 의료기관, 치료기관, 약국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곳을 말한다.

제2조 (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)

-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장애인의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후유장애를 무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 의료교육 관련기관 및 관련자 등이 시행하는 모든 건강과 관련한 교육과정에는 장애인에 관한 것이 포함되어야 하며, 이에 유형과 정도 및 성별을 고려한 내용으로 편성하여야 한다.
- ③ 누구든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건강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, 보건 의료에 관하여 알 권리를 배제·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④ 장애인은 자신의 일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의료기기, 보조기구 및 장애 특성 및 성별을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를 갖는다.

제3조 (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의무)

- 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다.
- ②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의 건강에 관하여 장애유형과 정도 및 성별에 따르는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,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③ 의료인은 의료적 판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경험을 존중하여야 하며,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또는 보조기구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 및 성별과 생애주기를 고려하여야 한다.
- ④ 모든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의학연구에 있어서 장애유형 및 정도와 성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제4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·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과 치료 등을 포함하여 건강권을 보장·증진하기 위하여 사회·자연 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대상으로 한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

21
334

의 경험과 요구를 반영하여야 하며, 전담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특성에 따른 의료받을 권리 보장 및 건강관리
에 필요한 조사와 개발,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, 장애
인의 권리 신장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조(건강권에서의 차별행위)

①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질병과 건강에 관하여 장애와 성별을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
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*제1항 2항 3항 4항*

② 지역사회에서 ~~공~~원 등의 건강유지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및 관련 시스템을 장애인이 이
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

③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겪는 자존감 부정과 사회적 소외에 따르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
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

④ 장애인의 성장기와 장애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보조기구가 없는 경우

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노출, 장애상태의 공개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
경우 *제1항*

⑥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의 장애특성에 따른 자립적인 참여체계가 없는 경우 *제1항 2항*

⑦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여성장애인의 임신, 출산을 비롯해 장애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
거나 (합리적 이유없이) 조건부로 제한하는 경우 *제1항*

⑧ 공공부조 및 사회보장 집행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하
는 장애로 인한 필수적 추가비용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*제1항*

⑨ 장애인에 대한 건강관리가 비장애인의 접근성과 비장애인에 대한 관리수준과 실질적으로
동일하게 시행되지 않는 경우

⑩ 기타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및 성별을 이유로 건강권을 배제·제한·구별 행위